



참전유공자의 남겨진 배우자가  
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 
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

제70회 현충일 추념사 中



대표 1577-0606  
[www.mpva.go.kr](http://www.mpva.go.kr)

## 참전유공자 배우자

등록 안내



# 등록 안내

## | 등록대상 |

### ① 참전유공자 배우자

\*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포함

### ② 미등록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

## | 신청기간 | 2026. 3. 17.부터 신청가능

\* 개정법 시행일(2026.3.17.) 기준

## | 신청방법 | 방문, 우편(주소지 관할 보훈(지)청에 신청)

## | 구비서류 |

### ① 등록신청서

\* 국가보훈부 누리집([www.mpva.go.kr](http://www.mpva.go.kr)) ▶ 국민참여/민원

▶ 민원사무서식에서 다운로드 가능

\* 전국 27개 보훈(지)청 보상과에 비치

### ② 병적증명서

\* 병적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\* 월남 참전의 경우 파월 기간 명시하여 발급

\* 병무청 또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

### ③ 신청인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

\* 참전유공자가 2008년 이전 사망한 경우 참전유공자의 제적등본 추가 제출

\*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

### ④ 신청인 신분증



# 등록 혜택

## 생계지원금 지급

### | 지원대상 |

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(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함)로서 80세 이상으로 생활이 곤란하신 분

\* 80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부터 신청가능

### | 신청방법 |

방문·우편(주소지 관할 보훈(지)청)

### | 구비서류 |

지급신청서, 가족관계증명서, 소득 및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임대차계약서 사본 등), 통장사본

참고 생활수준조사(소득조사) 결과 기준  
중위소득 50%이하

\* 2026년 소득인정액

1인가구	2인가구
1,282,119원	2,099,646원

\*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의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생활수준조사 없이 지급할 수 있음(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학인서 제출)

### | 지급금액 |

월 15만원(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)

## 보훈재가복지서비스

### | 지원대상 |

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로서 65세이상의 독거 또는 부부세대로 거동이 어려워 일상생활이 불편한 분

\* 유사서비스(노인돌봄, 장기요양(방문, 주간보호 등)) 이용자는 중복지원 불가

### | 지원내용 |

재가보훈실무관이 방문하여 청소, 빨래 등 가사활동, 건강관리 등 서비스 지원

### | 신청방법 |

주소지 관할 보훈(지)청에 신청서를 제출  
(자격요건 확인 후 지원)

# 자주 묻는 질문

### Q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배우자 등록 신청이 가능한가요?

예, 가능합니다. 참전유공자의 생존 여부와 관계없이 현재 6.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하신 분의 배우자라면 모두 등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이전에 참전유공자와 혼인 하였으나, 참전유공자가 아닌 사람과 재혼하였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.

### Q 다른 가족도 등록 가능 한가요?

배우자 외 가족은 참전유공자법에 의한 등록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

### Q 참전유공자 배우자 등록신청을 본인이 아닌 대리인 신청이 가능한가요?

위임 받은 경우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. 다만, 신청인의 신분증, 대리인의 신분증, 신청인의 도장, 신청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 등)를 지참하여야 합니다.

### Q 이미 국가유공자(보훈보상대상자)의 배우자로 등록이 되어있는데도 이번 참전유공자 배우자 등록 신청이 필요한가요?

참전유공자 외 전상군경·전몰군경·무공수훈자·재해부상군경 등 다른 국가보훈대상자의 배우자로 이미 등록되어 있다면,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